

# 물품구매 규정

제정 1998. 10. 1.      개정 2001. 9. 1.  
전문개정 2013. 3. 1.      개정 2013. 7. 1.  
   개정 2014. 3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물품구매·제작 및 수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청구절차)** ① 물품의 구매·제작 및 수리에 관하여 교육용 물품은 교학처장이, 기타 물품은 해당 부서장이 소정양식에 품목·수량·규격·용도를 명기하여 총무처장에게 요청하며 필요시 시방서·카타로그·도면·견본 및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1.>

② 물품구매·제작 및 수리 요청을 받은 해당부서장은 그 타당성 및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입찰·수의 계약 또는 단가계약 등의 방법을 명시하여 예산부서의 예산통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.

**제 3 조 (계약절차 및 방법)** ① 구매·제작·수리절차 및 방법은 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” (이하 “관련 법률” 이라 한다.)을 준용한다.

② 입찰 시에는 입찰방법·시방서·도면·견본 등을 업자에게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물품 검사원이 입회한다.

**제4조(참가자 자격)** ① 총장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정하되, 입찰내용에 따라 참가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**제5조(입찰 장소)** ① 입찰 장소는 교내 및 지정정보장치에 한한다. <개정 2013.7.1>

**제6조(개찰 및 낙찰자 결정)** ① 개찰은 입찰 장소에서 입찰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한다.

② 입찰에 대한 낙찰자의 선정은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종합심의 후 결정한다. 다만, 사업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.

**제7조(수의계약)** ① 제3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1.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·용역·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·구조·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부적당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함이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

2. 천재지변·긴급한 사유·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

② 경쟁 입찰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나 제작자가 극히 제한되어 입찰을 부칠 수 없거나, 기타 사유로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한 후 계약 상대방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 내에 들지 못할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단가계약)** 빈번히 구매하는 물품으로서 조달기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동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**제9조(계약서의 작성)**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단, 일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낙찰자가 낙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도급 또는 대행시킨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한다.

③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 사본 1통을 3일 이내에 물품 검사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계약보증금 및 연체료)** 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납품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납품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납품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을 환수한다. 계약보증금으로도 손해가 보전되지 않을 때는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.

**제11조(하자보증금)** ①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자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하자담보의 책임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12조(물품검사)** ① 납품된 물품은 지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작과정 중에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.

③ 기타 사항은 검수규정에 의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